

- ☒☒☒ 도로포장 복구공사 부실시공 등 -
언론보도 관련 특정감사 결과

2021. 6. 30.

 **인천광역시**
(감 사 관 실)

- ☐☐☐ 도로포장 복구공사 부실시공 등 - 언론보도 관련 특정감사 결과

* 감사배경 : 용진군 ☐☐☐ 도로포장 복구공사 부실시공 등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공사시행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리방안을 도출

I 현 황

□ 언론보도(2020.11.30.) 내용

- ① 용진군 ☐☐☐ 도로포장 복구공사 부실시공
 - 공사가 마무리된 지 1년여 밖에 안됐지만 도로 곳곳이 벗겨지고 움푹 파였다. 파인 부분을 살펴보면 아스콘 두께가 3cm도 되지 않아 기준치 미달이다.
- ② 불법하도급
 - 시공사 A업체는 아스콘을 공급받은 B업체를 포함해 다른 C업체에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를 맡겼다. A업체는 용진군이 불법하도급을 권유했다고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했다.
- ③ 불량아스콘 사용
 - ☐☐☐에서 도로포장 공사에 불량 아스콘이 사용되고 부실공사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다.

□ 포장 복구공사 현황

구 분	1차 복구공사	2차 복구공사
공 사 명	☐☐☐ 해수담수화시설 도로포장 복구공사	☐☐☐ 해수담수화 도로포장 복구 추가공사
공사내용	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=14,596㎡, 기타 부대공	아스콘 덧씌우기 A=4,160㎡, 기타 부대공
도 급 자	□□(주)	◇◇(주)
도급금액	당 초 : 144,575천원 준 공 : 170,456천원 (증 25,881천원)	당초 : 65,858천원 준공 : 64,111천원 (감1,747천 원)
공사기간	당 초 : 2018.10.29.~2018.12.27. 변 경 : 2018.10.29.~2019.12.02. (증340일)	2020.09.10. ~ 2020.11.08.

□ 감사 중점 및 대상

○ 중점내용

- 현장 관리감독 및 아스콘 품질관리 적정 여부
- 불법 하도급 시행 여부
- 기타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 전반

○ 조사대상 : 용진군(□과, ◇과)

II 감사결과

1. 현장 관리·감독 및 품질관리 소홀

- 용진군(□과)에서 「1차 복구공사」를 시행함에 있어 아스콘 포장작업 기간에 공사감독자가 현장에 입회하지 아니하였고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관리·감독을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음.
- 현장에 반입되는 아스콘에 대한 온도측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아스콘 온도 저하에 따른 재료 분리 발생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.
- 또한, 주민들의 요청으로 인하여 포장면적이 증가되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사 준공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설계변경 절차 없이 포장면적과 두께를 설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 후 준공한 사실이 있음.

2. 하도급 확인 소홀

- 용진군(□과)에서 시행한「1차 복구공사」와 「2차 복구공사」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라 전문공사(포장공사)를 하도급 할 수 없으나
- 준공금 청구서류 중 공사대금 포장공사 하도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용진군 ◇과와 □과에서는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청구서류를 접수(경유)한 사실이 있음.

3. 불량아스콘 사용 여부

- 아스콘 불량 여부는 시공 중에 운반되어온 아스콘 혼합물 샘플에 대한 시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, 아스콘 포설 후 상당시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불량아스콘 사용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임.

4. 서해5도 지역 제한적 공사 감독업무 수행

- ☒☒☒를 포함한 서해5도 지역은 여객선이 1일 3회만 운항하는 등 접근성이 매우 불리하고 기상상황에 따른 잦은 항로 통제 등 도서지역 특성상 공사 감독업무 수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장 관리·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.

5. 현지 출장 결과

- 포장상태 전반적으로 양호



포장상태 양호



포장상태 양호

- 언론보도 구간에 대한 하자보수 이행



하자보수 전



하자보수 후

○ 주요도로 및 마을안길 포장두께 확인



Ⅲ | 감사결과 의견

- (책임소재) 공사감독자가 ☒☒☒ 포장복구공사의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 관리·감독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.
- (의혹확인) 불법하도급 관련하여 준공금 청구서류 중 하도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이에 대해 용진군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치할 사안으로 판단됨
- (처분사항)
 - [훈계] 현장 관리·감독 소홀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소홀 등에 따른 공사감독자 훈계처분
 - [권고] 용진군에서는 서해5도 지역에 대한 공사감독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
 - [통보] 불법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하도급이 확인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

Ⅳ | 향후계획

- 처분(요구) ’ 21.6.30
- * 처분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재심의(이의신청) 청구 가능